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0505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20505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607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허경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수영

변론 종결 2022. 8. 18.

판결 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6074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D건물] 사이에 별지 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8. 8. 2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3쪽 17행의 "2011. 1. 23."을 "2011. 11. 23."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원고가"를 "C가"로, 20행의 "원고는"을 "C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 제8쪽 15행의 "체결되어"를 "체결된 후 2018. 8. 10.경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통지(2018. 11. 14.) 및 갹신 거절 의사표시가 이루어짐에 따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14쪽 3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과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사이에 "C의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 사이에"를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를 포함한 K씨 일가는 2019. 3. 이전까지 G고등학교 등을 경영하는 원고를 사유화하였으므로 원고와 경제공동운명체였다. C는 2018. 9. 3. E의 주소를 G고등학교로 기재하여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원고와 E는 2018. 9. 4. G고등학교로 배달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 9. 4.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2. 2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8. 9. 3. 내용증명우편으로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G고등학교로 보냈고, 2018. 9. 4. G고등학교 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와 경제공동운명체로서 2018. 9. 4. E가 송달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공유하여 피고와 C와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박성윤

판사김유경

별지